

행 정 자 치 부

징 계 · 주의 요구

제 목 5급으로의 승진 임용 부적정

기 관 명 기장군

징 계 대상자 기장군 ○○○○실(전 ○○과) 지방○○○○(전 지방○○○○○)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지방○○○○ ○○○는 2014. 7. 15.부터 2015. 8. 2.까지 기장군 인사 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 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나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7호, 2016.

6. 30. 개정)에 따르면 5급으로의 승진 예정 인원 산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승진예정인원 = 결원 + 퇴직인원 - 신규임용예정인원

- ▶ 결원 :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결원에서 제외
- ▶ 퇴직인원 : 해당 기간 중 정년퇴직예정인원(공로연수 확정자 포함), 명예퇴직 예정인원 및 기타 최근 3년 평균 면직인원(의원면직, 직권면직, 파면·해임 및 기타 당면퇴직 등 포함)
 - 퇴직인원으로 포함한 공로연수자는 퇴직할 때 재산정하지 않음
- ▶ 신규임용예정인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예정인원
 - 소숫점 이하의 인원은 1인으로 간주
 - 5급으로의 승진의결 횟수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결원만을 산정함

더불어 같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별표 4] <개정 2015. 11. 18.>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기장군에서는 ‘조직개편 관련 승진임용(안)’에 대하여 2015. 7. . 군수 결재

를 득한(○○과 -0000) 후 2015. 7.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 5급으로의 승진 예정 인원을 17명으로 산정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5급으로의 승진 예정 인원 산정 시 포함된 ○○○는 2017. 6. 30. 정년퇴직 예정자(2016. 5. 30. 공로연수 희망원을 제출)로 2015. 7. 30. 기장군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16명을 기초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 임용 범위를 47번까지를 심사 대상으로 하여야 했다.

그런데 부당하게 결원수를 17명으로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49번까지 포함되도록 하여 2016. 1. 1. 5급 승진심사 결과 순위 49번에 해당하는 ○○○○과 ○○○가 승진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기장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5급으로의 승진 예정 인원 산정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